

4단계 BK21 지구환경과학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내규

2021. 3. 1. 제정

<4단계 BK21 지구환경과학 교육연구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하 “BK21 사업”이라 함) 시행에 따른 지구환경과학 교육연구단(이하 “본 연구단”)의 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단의 BK21 사업의 모든 계획과 집행 및 평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연구단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전공영역별 5인으로 구성한다.

제3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본 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본교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이 모두 지구환경과학과 소속이어야 하며,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 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본 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본 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본 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참여교수의 변경) ①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제3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 선발) ①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으로 주 40시간 이상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석사과정 학생은 4학기 이내, 박사과정 학생은 8학기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12학기 이내인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한다.

- ② 매년 본 연구단 전체의 지원 대상 대학원생 규모는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로 결정한다.
- ③ 지원대학원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 ④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 ⑤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 ⑥ 연구실별 지원 규모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해당 연도의 본 연구단 전체 사업비 현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
- ⑦ 참여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생은 학술대회에서 최소 1회 이상 발표를 하며, 재학 기간 동안 국내 전문학술지 1편 이상의 논문 게재를 권장한다.
- ⑧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 및 석·박사통합 과정생은 종합시험을 통과하면 박사후보생이 되며, 최종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 1학기 전까지는 예비심사를 권장한다.
- ⑨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편 이상의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이중 최소 2편은 SCI급 논문에 주저자 게재)를 학위 청구의 최소 자격 요건으로 한다. 또한 학위 청구 시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학과 교수 전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 제6조(신진연구인력 선발) ① 신진연구인력은 전일제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매년 사업년도의 개시 이전에 교육연구단장이 선발한다.
1.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 포함) : 박사학위 소지자
 2. 계약교수 :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② 제1항의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매년 교육연구단장이 요구한 최소 연구업적(SCI 논문 수 및 IF. 합계)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 ④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 ⑤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하에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 ⑥ 신진연구인력의 기본급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계약 시 월 급여액을 결정하며, 재직 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경우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연구업적평가

- 제7조(연구업적평가) ① 본 연구단 연구의 업적은 매년 사업 종료(2월)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그 결과는 참여교수는 물론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사업 참여 및 지원 규모 결정에 활용한다.
- ② 연구업적평가는 기본적으로 참여교수의 연구실 단위로 평가하며, SCI급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full paper에 한한다. 다만, 대학원생의 연구실적 평가에는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도 포함한다.
- ③ 논문에 명시된 저자의 소속은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이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단 소속 참여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업적 1편을 연구실 별로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 ④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업적 평가에 있어서는 양적 지표(논문수) 및 질적 지표(Impact factor; 당해 평가년도 또는 전년도 수치를 적용)를 함께 고려한다(각 50% 적용). 평가 대상 논문은 평가년도 안에 출간된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4단계 BK21 사업 평가지표를 고려한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연구단에서 당초 제시한 사업년도별 연구목표(JCR 분야별 상위 10% 국제학술지, Scopus 기준 사업단 피인용 횟수, NSC급 논문)에 근거하여 매년 연구실별로 연구업적 목표를 제시한다. 연구실별 연구업적 목표는 당해연도의 사업비 지원 규모(대학원생 지원, 장단기 연수)에 비례하여 제시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연구실별 연구업적 평가는 당해연도 할당 목표 달성률(%)에 의한다(단, 사업이 개시되는 1차년도의 지원 규모는 연구실별 대학원생 현황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실별 연구업적 달성률은 차기년도 사업비 배분에 반영한다. 즉,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기년도의 연구실별 사업비 지원 규모는 증가 또는 감소되며, 나아가 참여교수(소속학과 교수 80% 이상)의 교체에도 활용한다. 이에 대한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연구성과급

- 제8조(연구성과급) ① 본 연구단에 참여한 전일제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 중 우수한 SCI 연구논문을 책임(주/교신) 저자로 발표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② 인센티브 지원 대상 논문은 사업년도 중 발표 또는 게재 확정된 SCI급 논문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소속은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 ③ 지원 대상자 선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수시로 결정한다
- ④ 성과급의 규모에 대한 결정은 지원 대상 논문의 I.F.에 기준한다.

제6장 단기해외연수 지원

- 제9조(단기해외연수 지원) ① 지도교수와 대학원생(반드시 포함)이 공동 팀을 구성하여 해외 우수연구자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저명 국제학술대회(4개국 이상 참여)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② 지원 대상자는 매년 사업년도 개시 전에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원생 및 신진인력의 지원 대상자는 연수 목적 수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논문 등의 경우 주/교신저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지원비는 교내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로 지급 및 정산한다.

⑤ 해외 우수연구자와의 공동세미나 개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외우수연구자의 논문실적, 이력서와 공동세미나개최 확인 서신을, 국제학술대회 참가 시에는 논문발표수락서를 지원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본 연구단에 사전 제출한다.

⑥ 해당연도의 신청자가 많아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장 장기해외연수 지원

제10조(장기해외연수 지원) ① 본 연구단 참여 인력이 세계 수준의 외국 대학에서 장기체류를 하면서 연구프로젝트의 공동연구 또는 실험에 참여케 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연구논문을 작성토록 하고 국제연구협력 증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는 사업년도 개시 이전에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한다.

③ 지원 규모는 원칙적으로 교내여비규정에 따르며, 입국 후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정산한다.

④ 장기해외연수를 마친 지원자는 귀국 후 1년 이내에 관련 연구논문을 공동저자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해당연도의 신청자가 많아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8장 부실 학술활동 예방

제11조(부실 학술활동 예방) ① 본 연구단 참여 인력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해야 한다.

② 참여교수는 참여대학원생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하고 컨설팅을 해야 하며, 반드시 제3항과 제4항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③ 논문 투고 시 점검사항

1. 본인 또는 동료는 아는 학술지인가?
2.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3. 편집위원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4. 명확한 동료평가(peer review)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5.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한가?

④ 학회 참석 시 점검사항

1. 학회 개최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
2. 본인 또는 동료는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
3.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4. 범위와 목적이 관심 분야에 적합한가?
5. 기조 연설자 및 편집위원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⑤ 제3항과 제4항의 체크리스트 이외에도 부실학술활동 예방 관련 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제9장 해외학자 초빙 지원

제12조(해외학자 초빙 지원) ① 본 연구단의 연구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 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④ 해외학자초빙 비용은 교내 전문가활용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장 행정사항

제13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과 본교의 관계 규정 및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추가사항과 세부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